

#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이효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에서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의 ‘21인’에서 ‘10명 이상 25명’으로 개정하여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